

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, 출산 및 혼인세액공제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(예산) 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됩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8.18. 서울신문은 「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폐지?...‘조세 복귀’도 화약고」 기사에서,
 - “조세지출 정상화 방안도 ... ‘증세’는 아니지만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”,
 - “정부는 2009년 도입 이후 17년간 유지되어 온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을 올해 말 종료 ... 전기차·수소차 감면 역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. 이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캐즘을 보완하던 하이브리드차 수요까지 급격히 위축될 것”,
 - “출산·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쟁점 중 하나”, “신용카드·체크카드 등의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추가 공제는 폐지 후 일반 소득공제 체계로 일원화...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이미 충분히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 부처 입장>

-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, 출산 및 혼인세액 공제 등은 조세지원 방식이 재정(예산)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, 지원이 폐지·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.
 - 재정지출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제도는 정부의 지원 목적은 유지하되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재정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.
 -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,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

□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목표로 '09년부터 시행되어 장기간 하이브리드차 보급확대에 충분히 기여한 점, 보다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확대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료하는 것입니다.

○ 최근 하이브리드차는 우수한 연비 등 경쟁력을 토대로 안정적 시장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, 그간 구매보조금 폐지('19년), 취득세 감면 축소('20,'21년)·폐지('25년) 등 제도 개편 시에도 하이브리드차 보급대수는 지속 증가*해왔습니다.

* 신규 등록대수(천대) : ('19) 104 ('20) 173 ('21) 240 ('22) 275 ('23) 392 ('24) 512 ('25) 592

□ 전기차·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비는 개별소비세 감면이라는 일률적 지원방식을 맞춤형 재정지원(구매보조금)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.

○ 개별소비세 감면에 비해 재정지원(구매보조금)은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, R&D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친환경차의 국내 생태계 육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,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·수소전기차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,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.

□ 출산·입양세액공제의 경우, 재정지원 전환을 통해 현행 출산세액공제상 최대 공제액(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) 이상의 혜택을 출산·입양시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○ 혼인세액공제*의 재정전환의 경우 현재 세액공제 대비 지원대상을 넓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*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소득세 세액공제(생애 1회)
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*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는 제약이 있어, 모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* (기본공제율) [신용카드] 15% / [현금영수증·직불형카드 등] 30%

(추가공제율) [도서·공연·박물관 등 사용분] 30%(총급여 7,000만원 이하만 적용)

[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] 40%

- 정부는 조세지출 제도의 재정지원 전환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, 정책 효과와 행정 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
- 출산세액공제를 포함한 소득세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출 방식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 납세자는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
 - 반면 재정지원 방식은 정책목적, 소득수준, 지역 여건 등 여러 기준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에 보다 효과적입니다.
 - 또한, 세제지원 방식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되지만 재정 지원 방식은 지원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책시차가 짧습니다.
 - 국민들께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중요한 출산·혼인지원 등의 경우 정책시차가 짧은 재정지원이 세제지원 방식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
 - 마지막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, 통상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의 통합이 바람직합니다.
 - 예를 들어 조세지출방식의 출산세액공제와 재정(예산) 지원 방식의 첫만남이용권의 경우, 연말정산 시와 출산 시 각각 신청을 해야 하지만 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될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행정 편의가 개선됩니다.
-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, 출산 및 혼인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제도를 재정(예산)지원으로 전환 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15-4140)
		담당자	사무관	오다은 (daeunly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기금운용혁신과	책임자	과 장	김건민 (044-214-23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영 (zudoro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문경호 (044-215-4210)
	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	담당자	사무관	현원석 (ishyeon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훈 (gogoji92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김완수 (044-215-4330)
	재정경제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	담당자	사무관	김정아 (jjong2306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김의영 (044-214-25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희 (kkuljam@korea.kr)
	기획예산처 예산실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	책임자	과 장	박현창 (044-214-27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재현 (parkjae86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진민규 (044-214-2910)
	기획예산처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	담당자	사무관	김진수 (kimjinsu@korea.kr)